

[붙임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민원인 인 적 사 항	성 명	부현숙	단체명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1로64		
	전화번호	031-960-3694	휴대전화번호	
의견내 용 및 찬반여 부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찬반 여부
	제12조(교권보호국) 교권 보호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권보호에 관한 사 항 2. 학교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 항 3. 학생생활 안전 및 양성평등 교육에 관한 사 항 4. 교육환경에 관한 사 항 5. 학교폭력예방 및 상 담활동에 관한 사항 6. 학교업무경감 등 학 교 행정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규칙으 로 정하는 사항	1. 주요 반대 사유 및 문제점 • 첫째, 학교보건의 본질인 '선제적 예방 및 교육 기능'의 실종 우려 학교보건은 학생들의 건강증진, 감염병 예방, 체계적인 보건교육 등 '선제적 예방'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설 예정인 '교권보호국'은 사후 갈등 처리(교권 침해 대응, 악성 민원 해결, 학교폭력 분쟁)에 특화된 조직입니다. 성격이 전혀 다른 보건 업무가 교권보호국 산하로 편입될 경우, 보건교육 과정 개발 및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 기획 기능은 후순위로 밀려 보건 행정의 전문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 둘째, 학교 현장의 '업무 떠넘기기(핑퐁)' 심화 및 보건교사 직무 마비 조직개편안은 '학생생활(학폭)'과 '보건'을 하나의 과로 묶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가장 기피하는 갈등성 업무(학폭 사안 조사, 정서 행동 위기학생 관리 등)가 "교권보호국 내 동일 부서 업무"라는 명목하에 보건실과 보건교사에게 전가되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대다수 학교에서 1인 체제로 근무하는 보건교사에게 과도한 갈등 관리 업무가 떠넘겨진다면, 응급처치와 감염병 감시 등 고유의 보건의료 직무는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2. 요구사항 및 대안 제시 • 요구 1. 학생 건강권 보장과 보건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학교보건 업무를 사후 갈등 처리 부서인 '교권보호국'에서 제외하고 독립적인 보건 정책 컨트롤타워(예: 보건교육 전담 부서)를 구축해 주십시오. • 요구 2. 만약 이관이 강행된다면, 향후 시행규칙 및 학교 업무 매뉴얼 개정 시 "보건교사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사후 생활지도, 정서 위기학생 상담 대행 업무에서 제외한다"는 '업무 한계선 분리 조항'을 명문화하여 현장의 갈등을 원천 차단해 주십시오. • 요구 3. 교권보호국 내 보건 예산 및 보건교육 장학 계획이 교권·학폭 일반 회계에 흡수되지 않도록 독립된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운영할 것을 보장해 주십시오. 현장에서 보건교사들은 교권 보호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조직 설계로 인해 학교보건 체계가 흔들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		반대

		란히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 침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장 보건교사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교육과 건강이 상생할 수 있는 전향적인 조직개편안 조정을 단행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	--	--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제출자: 성명 부현숙 

경기도교육감(행정관리담당관) 귀하